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시행



윤경채 국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1. 개요

중국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총괄 법률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구 노동부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보호법」, 「직업안전보건법」, 「안전생산법」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안전보건총합법의 법안을 전국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급진전하게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래 안전보건의 몇 개의 성, 청으로 분할된 것에 따라서 향후 법안은 각 담당부서나 위원회로부터 제출되고 있으며, 이전보다는 채택이 쉬울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법령안으로서 직업병 예방치료법이 있고, 국무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경제무역위원회에서도 직업안전법을 수립하여 국무원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

여성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으로써 기업이 여성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 종업원생육보험실행규칙」(1994년 12월 14일 제정), 「여성종업원 근로보호규정(국무원 영 제9호)」(1988년 7월 21일 공포),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국가주석령 제58호)」(1992년 4월 3일 공포)가 있다.

이번에 중국의 안전생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2002년 6월 29일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주석강택민)으로 공포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협회는 국내 최초로 중국과의 안전 부문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포된 안전 생산법을 게재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의 안전관계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안전생산법의 특징

안전생산법은 모두 7장으로 97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제1조에서 법 제정 목적으로써 안전생산활동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감소시켜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 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현(현)단위의 인민정부에서 안전생산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즉시 협의,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안전 생산 면의 합법적 권익을 인정하고 있다.

3. 중국의 법령 체계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간의 차이도 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며, 각 성에서는 독자적인 법령을 만드는 권한을 주고 있다.

또 중국의 법령의 호칭 및 체계는 법(전국 인민대표대회)-조례(국무원)-규정 표준(部)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 정부가 정하는 법령은 〇〇성 〇〇조례(성)으로 부르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은 2002년 6월 29일, 제 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활동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사고를 방지 및 감소시켜,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시행하는 안전생산활동에 이 법률이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로써 소방 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로교통안전, 민간용항공안전에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된다.

제3조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일로 재해 예방을 하는 방침이다.

제4조 사업자는 필히 이 법률과 다른 안전 생산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생산 책임제도를 만들고, 완비하여 안전생산의 조건을 정비 및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조 사업장의 주된 책임자는 본 사업의 안전생산을 전면적으로 담당한다.

제6조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안전생산에 대한 보장을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법률에 의해 안전생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직원과 노동자를 모아

본 사업의 안전생산의 민주관리 및 민주감독에 참가하여 직원과 노동자의 안전생산면의 합법적 권익을 지킨다.

제8조 국무원과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업무의 지도를 강화하고, 관계하는 각사업자가 법률에 의해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무를 이행할 것을 지시, 독촉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즉시 협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9조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 담당 부문은 이 법률에 따라 전국의 안전생산업무를 총합적으로 감독 관리하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 담당부문을 이 법률에 따라 각자의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업무를 관리감독한다.

국무원 관계부문을 이 법률과 다른 관계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계하는 안전생산업무를 관리감독하고,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계부문을 이 법률과 다른 관계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계하는 안전생산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제10조 국무원 관계부문을 안전생산에 대한 보장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즉시 관계되는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을 법률에 따라 제정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즉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자는 필히 법률에 따라 제정된 안전생산에 관한 국가 기준 혹은 업계기준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계부문을 다양한 형식을 채용하여 안전생산에 관한 법규 및 안전생산 지식의 선전을 강화하고, 직원과 노동자의 안전생산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제12조 법률에 의해 설립된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중간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업무집행 준칙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안전생산업무를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의 책임 사항을 제도화하고 이 법률과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 생산안전사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

제14조 국가는 안전생산과학기술의 연구와 안전생산 선진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여 안전생산수준을 높인다.

제15조 국가는 전 생산조건의 개선, 생산안전사고의 방지, 응급구조의 참가 등으로 현저한 성과를 올린 부문 및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특별기고

제2장 사업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보장

제16조 사업자는 이 법률과 관계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기준 혹은 업계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않거나 갖추지 않는다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는 본 사업의 안전생산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직책을 맡는다.

(1) 본 사업의 안전생산책임제를 설립하고, 전전화 시키는 것

(2) 본 사업의 안전생산규칙제도와 시행규정의 제정을 수립하는 것

(3) 본 사업의 안전생산활동의 유효적 실시를 보장하는 것

(4) 본 사업의 안전생산업무를 감독·검사하여 즉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는 것

(5) 본 사업의 생산 안전사고시 응급조치 체제화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

(6) 즉시 규정에 의해 생산안전사고를 보고하는 것

제18조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생산 조건에 필요한 투자 자금은 사업자의 정책결정 기관의 주요 책임자 혹은 개인 경영의 투자자가 보정함과 동시에 안전 생산에 필요한 투자 자금 부족으로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9조 광산 건축시공 부문 및 위험물의 생산 경영 보관부문은 안전생산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안전생산관리자를 선임·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사업자로서 근로자 수가 300인을 넘는다면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안전생산관리자를 선임·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근로자 수가 300인을 넘는다면 부임 혹은 겸임의 안전생산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혹은 국가가 부문 기술자격을 가진 공사기술자에게 안전생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항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기술자에게 안전생산관리서비스를 위탁할 경우에도 이 사업자가 안전생산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0조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자는 필히 본 사업의 생산경영활동에 따른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위험물의 생산, 경영, 보관사업자 및 광산, 건축시공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자는 관계되는 주관

부문의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을 심사 및 합격 후에 최초로 임명된다. 심사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1조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행하여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갖추고 관련 안전생산 규정제도와 안전 조작규정을 숙지하여 본 직장의 안전조작기능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에 합격되지 않은 근로자는 그 직에 취임해서는 안된다.

제22조 사업자가 신노동방법, 신기술, 신재료 또는 신설비를 채용할 때 필히 그 안전기술 특성을 이해 파악하여 유효한 안전방비와 보호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부문적인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3조 사업장의 특수 작업원은 필히 국가규정에 의한 부문의 안전작업 훈련을 받아 특수작업조작자격을 취득한 후에 최초로 그 직에 취임하여 작업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수작업자의 범위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의 담당 부문이 국무원 관계부문과 공동으로 확정한다.

제24조 사업자의 신축, 개축, 증축의 공사사항(이하 건설사항이라 함)의 안전시설은 필히 주공정과 동시에 설계공사하고, 생산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시설의 투자는 건설사항비용에 포함시킨다.

제25조 광산건설사항과 위험물의 생산 보관용의 건설사항은 각각 관계되는 국가규정에 의해 안전조건 심사 및 안전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6조 건설사항의 안전시설의 설계자, 설계사업자는 안전시설의 설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광산건설사항과 위험물의 생산보관용 건설사항의 안전 시설설계는 관련된 국가규정에 의해 관계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며, 심사부문 및 그 심사의 책임자는 심사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27조 광산건설사항과 위험물의 생산 보관용의 건설사항의 시행사업자는 필히 인가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의 공정 품질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광산건설사항과 위험물의 생산 보관용 건설사항을 완성하고, 생산 혹은 사용하기 전에 필히 관계되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의 검수를 받고 검수에 합격한 후에 생산 혹은 사용할 수 있다. 검수부문 및 그 검수자는 검수결과에 책임진다.

제28조 사업자는 비교적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장소와 관계되는 시설 설비에 명확한 안전경고표지를 설치하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시행

지 않으면 안된다.

제29조 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거부, 사용, 검사, 보수, 개조 및 폐기처분은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자는 필히 안전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 보호·수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지 보호·수리·검사는 기록을 하여 관계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0조 사업자가 사용하는 생명의 안전에 관계되는 위험성이 비교적 큰 특수설비 및 위험물의 용기 운송수단은 필히 관계되는 국가규정에 따라 부문의 생산자가 생산하고 부문적 자질이 있는 검사 측정기관의 검사 측정에 합격하여 「안전 사용정」 혹은 「안전 표장」을 취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검사 측정기관은 검사 측정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

생명의 안전에 관계되는 위험성이 비교적 큰 특수설비의 목록은 국무원의 특수설비의 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고 나서 집행된다.

제31조 국가는 생산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주는 노동방법 기술과 설비에 대해서 퇴출제도를 실시한다.

사업자는 국가가 사용금지를 명한 것과 생산안전에 위협을 주는 노동방법 기술,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2조 위험물의 생산, 경영, 운송, 보관, 사용 혹은 폐기 처분은 관계 주관부문이 이러한 것에 대응하는 법규 규정과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에 따라 심사 허가함과 동시에 관리감독한다.

위험물을 생산, 경영, 운송, 보관, 사용 혹은 폐기 처분하는 사업자는 필히 관련된 법규와 국가기준, 업계기준을 준수하고, 부문의 안전관리제도를 설립하여 확실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주관부문의 법률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33조 사업자는 중대한 위험원을 기록하고, 보존서류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검사·평가·감독 규제함과 동시에 응급여비의 계획을 제정하고, 종업원과 관계자에게 추진해야 할 응급조치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자는 관련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험원 및 그에 따른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관계되는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의 담당 부문과 관계부문이 기록하기 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4조 위험물을 생산·경영·보관·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근로자의 기숙사와 같은 건물 내에 있어

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기숙사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업장과 근로자의 기숙사에는 피난시설에 대한 지시 표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통로는 항상 확보하고, 출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업장과 근로자의 기숙사의 출구를 봉쇄·차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5조 사업자는 폭파나 인력 혹은 기계로 성형부재를 들어 올려서 조립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할 때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조작규정의 준수와 안전조치의 수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6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실행하도록 교육 독촉하지 않으면 안되며 근로자에게 작업장과 업무에서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지조치 및 사고의 응급조치를 실정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7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에서 정한 노동안전위생보호구를 필히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사용규칙에 따라 착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8조 사업장의 안전생산관리자는 사업의 생산경영 특성을 기초로 안전생산상황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중 발견된 안전문제는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검사 및 처리상황은 기록을 하여 서류로써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9조 사업자는 노동안전위생보호구의 배치와 안전생산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0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작업 구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할 때, 서로의 생산안전에 위협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안전생산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각각의 안전생산관리의 직무 안전조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부문의 안전생산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검사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1조 사업자는 생산경영사항, 장소, 설비를 안전생산 조건 혹은 수반되는 자질이 없는 사업자, 개인에게 도급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생산경영 사항이나, 장소에 대한 하청업자, 빌리는 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는 하청업자, 빌리는 업자와 부문적인 안전생산관리 협정을 체결하거나 혹은 도급 계약, 임차 계약 중에서 각각의 안전생산관리의 직책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자는 하청업자, 빌리는 업자의 안전생산활동을 동일하게 관리한다.

특별기고

제42조 작업장에서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긴급구조 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고의 조사처리 기간 중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제43조 사업자는 법률에 의해 노동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장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44조 사업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노동계약에는 근로자의 노동안전의 보장, 직업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 및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재해보험을 취급할 사항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어떠한 형식으로도 협정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안전 사망재해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책임을 면제 혹은 경감해서는 안된다.

제45조 근로자는 작업장과 직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지조치 및 사고의 응급조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사업자의 안전생산업무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46조 근로자는 사업의 안전생산업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 통고, 고발할 권리가 있고, 법규에 위반하는 지시나 위험적인 작업에 대한 강제명령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사업의 안전생산업무를 지적, 통고, 고발하거나, 혹은 법규에 위반하는 지시와 위험적 작업에 대한 강제명령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급료, 복지 등의 대우를 줄이거나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제47조 근로자에게 직접적 위험을 줄 긴급상황을 발견할 경우 작업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에서 피난할 권리가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전항의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 작업을 정지하거나 긴급피난 조치를 취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급료, 복지 등의 대우를 감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제48조 생산안전사고로써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노동재해 보험을 받는 것 이외에, 관계되는 민사법률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9조 근로자는 작업 중 본 사업자의 안전 생산의 규정 제도와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따라, 노동안전위생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0조 근로자는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아, 담당의 직무 작업에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배워 안전생산기능을 높이고, 사고방지와 응급처리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제51조 근로자는 사고의 잠재적 위험이나 기타 불안정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의 안전생산관리자 혹은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보고를 받은 자는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2조 노동조합은 건설사항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정을 동시에 설계하고, 시공, 생산과 사용하는 것을 감독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사업자가 안전생산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 잡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가 법규에 위반하는 지시와 위험적 작업을 강제 명령할 것을 발견, 또는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결의 제안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 사업자는 즉시 답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에게 근로자를 유도하여 위험장소로부터 피난시킬 제안을 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필히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사고조사에 참가하여, 관계부문에 처리의 제안을 제출하고, 관계자에게 책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제4장 안전생산의 감독관리

제53조 현급 이상의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상황을 기초로 관계되는 부문의 직무에 따라 분단시키고,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생산경영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시행하고,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54조 이 법률의 제구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이하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이라 함)은 관계되는 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안전생산에 관계되는 사항의 심사나 허가(비준, 인가, 허가, 등기, 인정, 정서면상의 교부 등을 포함 검수)가 필요할 때에는 필히 엄격하게 관계법규와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과 순서를 근거로 심사를 하고, 또한 관계법규와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허가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시행

검수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법률에 의한 허가의 취득, 검수에 합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관계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심사 허가부문이 발견하든가, 고발을 받은 후에 즉시 단속하여, 법률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률에 따라 이미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에 대해서 안전생산조건을 갖춰져 있는 것을 행정심사 허가부문이 발견한 경우에는, 본래의 허가를 취소시켜서는 안된다.

제55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은 안전생산에 관계되는 사항을 심사·검수할 때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되고, 심사·검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제작사 혹은 지정하는 생산, 판매사업자의 안전설비, 기재 혹은 다른 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56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업무의 부문은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생산에 관한 법규와 국가 기준, 혹은 업계 기준의 집행 상황을 감독·검사하고, 이하의 직무상의 권리를 행사한다.

(1) 사업장에서 검사를 하고, 관계자료를 가져오게 하여 편람하고, 관계 사업자와 인원 상황을 묻는다.

(2)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생산위법행위는, 그 장소에서 바로 수정·조치하거나 기한을 주어서 개정을 요구한다. 법률에 따른 행정처벌을 주어야 할 행위에는 이 법률과 다른 관계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행정 처벌을 결정한다.

(3) 검사에서 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배제하도록 명하지 않으면 안되며, 중대한 사고의 잠재 위험을 배제 이전, 혹은 배제의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위험구역 내의 근로자를 대피시켜 일시적인 생산정지, 영업정지 혹은 사용정지를 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대한 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을 배제한 후에, 심사하여 동의를 얻어낸 다음에 생산경영활동과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4) 안전생산에 대한 보장의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시설, 설비, 기재를 봉인하거나 압수함과 동시에 십오일 이내에 법률에 따른 처리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검사는 검사받는 사업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57조 사업자는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을 감독하는 검사원(이하 안전생산감독 검사원이라 함)은 법률을 근거로 한 감독검사업무의 이행에 협력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을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58조 안전생산감독검사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여, 공평하게 법률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생산의 감독 검사원은 감독검사업무를 집행할 때, 필히 유효한 감독법률의 집행이라는 것의 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사업자의 기술적 비밀과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9조 안전생산감독검사원은 검사의 시간, 장소, 내용, 발견한 문제와 그 처리상황에 대해, 기록서류를 만들고, 이것에 검사원과 검사를 받은 사업자의 책임자가 서명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사업자의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원은 상황을 기록하여 보존함과 동시에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0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은, 감독검사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명확히 분별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면, 서로의 상황을 통보하여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견된 안전문제를 다른 관계부문이 처리해야 한다면, 즉시 다른 관계부문에 기록을 붙여 참고를 준비하여 이송하며, 이송을 받은 부문은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1조 감사기관은 행정 감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 및 그 근무원이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시행하는 것을 감사한다.

제62조 안전평가, 인증, 검사측정, 검정을 맡은 기관은, 국가가 규정하는 자질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며, 스스로가 제출한 안전평가, 인증, 검사측정, 검정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63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지는 부문은, 보고 체제를 수립하여, 전화번호, 우편 혹은 MMS 주소를 공개하고, 안전생산에 관한 보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리된 보고사항은 조사로써 확인하여, 서면자료를 만들고, 정리와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면 관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서명을 받아놓아서 실행을 감독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4조 사업자나 개인은 사고의 잠재적인 위험, 혹은 안전생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지는 부문에 보고 혹은 통고할 권리가 있다.

제65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그 소재구역 내의 생산경영 사업자에게 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안전생산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지방의 인민정부 혹은 관계부문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기고

제66조 현금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계부문은 중대사고와 연관되는 잠재적인 위험의 보고 혹은 안전생산위법행위의 보고에 공로를 올린 자에게 포상을 준다. 구분적인 포상방법은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의 담당 부문이 국무원 재정부문과 연휴 공동으로 하여 제정한다.

제67조 신문, 출판, 방송, 영화, TV 등으로 사업자는 안전생산선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생산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여론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5장 생산안전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제68조 현금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계부문을 모아, 행정구역 내의 특별히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의 응급구조여비 계획을 제정하여, 응급구조시스템을 수립한다.

제69조 위험물의 생산, 경영, 보관사업자 및 광산, 건축시공사업자는 응급구조조직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며, 생산경영규모가 비교적 적어서 응급구조조직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검임 응급구조원을 지정한다.

위험물의 생산, 경영, 보관 사업자 및 광산, 건축시공사업자는 필요한 응급구조기재, 설비를 배치함과 동시에, 유지 보호, 보수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확보한다.

제70조 사업장의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자는 사고의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유효한 조치를 채택, 긴급구조의 작업을 수행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망자와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국가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즉시 실정대로 지방의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무를 가진 부문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은폐 또는 잘못 보고하거나, 기일을 넘겨서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의로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관계증거를 은폐해서는 안된다.

제71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은, 사고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가가 관계하는 규정에 따라 사고상황을 상급 부문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과 관계 지방 인민정부는 사고의 상황을 은폐하여 보고해서는 안되며 잘못 보고하거나, 기일을 넘겨서 보고해서는 안된다.

제72조 관계되는 지방 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의 책임자는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진급

구조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3조 사고의 조사처리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원칙과 과학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하여 즉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의 교훈을 총괄하며, 정리와 개선의 조치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고의 책임자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고조사와 처리의 구분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74조 사업장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사업자의 책임을 조사하여, 명확히 하고, 법률을 준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생산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허가와 감독의 직책을 담당하는 행정부문의 책임도 조사하고, 명확히 직책을 다하지 않는다면, 오직 행위가 있다면, 이 법률의 제7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제75조 어떠한 사업자, 개인도 법률을 근거로 한 사고의 조사처리를 방해,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76조 현금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은 정기적으로 행정구역 내의 생산안전사고의 발생상황의 통계를 작성,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장 법적책임

제77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지는 부문에서 근무하는 자는, 이하의 행위의 어떠한 것이 있을지 강력하거나 또는 면직의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1) 법률에 정해진 안전생산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안전생산에 관한 사항을 허가, 혹은 검수를 하는 것

(2) 법률에 따른 허가, 검수를 받지 않는 사업자가 무단으로 관계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처리를 하지 않는 것

(3) 법률에 따라 모든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감독관리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업자가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거나 안전위법행위를 발견했는데도 조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

제78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맡은 부문이, 심사, 검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지정한 안전설비, 기재 혹은 다른 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생산사항의 심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시행

나, 검수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 혹은 감사기관으로부터 시정과 받은 비용의 반환을 명하고, 상황이 중대하다면, 직접 책임을 질 주관자와 기타의 책임자에 대해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79조 안전평가, 인정, 검사측정, 검정의 기구가 거짓의 정명을 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취득자산을 몰수하여 취득자산이 오천원 이상의 경우 몰수함과 동시에 불법취득자산의 두배 이상, 다섯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천원 미만의 경우,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소득의 몰수함과 동시에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사업자와 함께,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전항의 위법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을 철회하여 취소한다.

제80조 사업자의 정책 결정 기관, 주요 책임자, 개인경영의 투자자가 이 법률에 정해진 안전생산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보장하지 않고, 생산경영사업자가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기한부로 개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생산정지, 영업정지, 정리를 명한다.

전항의 위법 행위에 따라, 생산안전사고를 일으켜,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에게도 면직 처분을 하고, 개인경영의 투자자를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1조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가 이 법률에 정해진 안전생산관리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로 개정한 것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에게 생산정지, 영업정지, 정리를 명한다.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가 전항의 위법행위에 따라, 생산안전사고를 일으켜,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직, 혹은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의 집행완료일 혹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는 어떠한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를 담당해서는 안된다.

제82조 사업자에게 이하의 어느 행위가 있다면, 기한부로 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는다면, 생

산 정지, 영업 정지, 정리를 명함과 동시에,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른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 혹은 안전 생산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것

(2) 위험물의 생산, 경영, 보관사업자 및 광산, 건축 시공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자가 규정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지 않는 것

(3) 이 법률의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정해진, 근로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이 법률의 제36조에서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안전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대로 알리지 않는 것

(4) 특수 작업 근로자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문의 안전 작업훈련을 받아, 특수작업의 조작자격 증명서를 취득시키지 않고 그 직에 취업하여 작업하는 것

제83조 사업자에게 이하의 어느 행위가 있다면, 기한부로 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는다면 건설의 정지, 혹은 생산정지, 영업정지, 정리를 명함과 같이 함께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결과를 일으켜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광산건설사항 혹은 위험물의 생산, 보관용의 건설사항에 안전시설의 설계가 아닌 것, 혹은 안전시설의 설계가 규정에 의한 관계부문의 심사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

(2) 광산건설사항 혹은 위험물의 생산, 보관용의 건설사항의 시공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안전시설설계를 근거로 하여 시공을 하지 않는 것

(3) 광산건설사항 혹은 위험물의 생산, 보관용의 건설사항이 완성하고, 생산 혹은 사용 전에, 안전시설의 검수합격을 받지 않는 것

(4) 비교적 큰 위험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혹은 관계되는 시설, 설비에 명쾌한 안전경고표식을 설치하지 않는 것

(5) 안전설비의 거부, 사용, 검정, 개조나 폐기가,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

(6) 안전설비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 보호, 보수와 정기 검정을 하지 않는 것

(7) 근로자에게 국가기준 혹은 업계기준에 적합한 노동 안전위생보호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

(8) 특수설비 및 위험물의 용기, 운송수단을 부문 자격이 있는 기관의 검사, 검정의 합격을 취득해 놓지 않고, 안전 사용증 혹은 안전 표장을 취득하려고 사용하는 것

(9) 국가가 사용금지를 명확히 명했는데도 생산안전에

특별기고

위험을 주는 노동방법 기술과 설비를 사용하는 것

제84조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무단으로 위험물을 생산, 경영, 보관한다면, 그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위법소득의 몰수와 함께, 위법소득의 한배 이상, 다섯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이라면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거나, 위법소득의 몰수함과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일으키는 범죄가 있다면,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사업자에게 이하의 어느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부로 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정지, 영업정지, 정리를 명함과 동시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중대한 결과를 일으키는 범죄가 된다면,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의 생산, 경영, 보관, 사용으로, 부문의 안전관리제도를 설립하지 않거나, 확실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혹은 관계 주관 부문이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지 않는 것

(2) 중대한 위험원을 기록하여 보존서류를 만들지 않거나 평가, 감독 규제를 하지 않고, 응급 예비계획을 제정하지 않는 것

(3) 폭발이나, 인력 혹은 기계로 성형부재를 들어 올려서 조립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할 때, 부문적 관리자를 수행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것

제86조 사업자가 생산경영사항, 장소, 설비를 안전생산 조건, 혹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에게 청부를 주거나, 혹은 대출하는 경우, 기한부의 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만원 이상이라면, 위법 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위법 소득의 일배 이상, 다섯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든가, 혹은 위법소득이 5만원 미만이라면,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일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산안전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하청업자, 빌리는 사업자와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사업자가 하청업자, 빌리는 사업자와 부문적인 안전생산관리협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도급계약, 대출계약으로 각자의 안전생산관리정책을 명기하지 않거나 하청업자, 빌리는 사업자의 안전생산을 통일적으로 협의,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의 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

하지 않는다면, 생산정지, 영업정지, 정리를 명한다.

제87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작업 구역 내에서 상대의 안전생산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산경영 활동을 할 때,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않거나, 혹은 부임의 안전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로 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한다.

제88조 사업자에게 이하의 어느 행위가 있다면, 기한부로 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정지, 영업정지, 정리를 명하고, 중대한 결과를 일으키는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을 생산, 경영, 보관, 사용하는 현장, 상점, 창고와 근로자의 기숙사가 같은 건물 내에 있거나 근로자의 기숙사와의 거리가 안전요구에 적합하지 않는 것

(2) 사업장과 근로자의 기숙사에 긴급대피처시에 적합한 표지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한 출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혹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기숙사의 출구를 봉쇄하여 차단하는 것

제89조 사업자가 근로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생산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저야 할 책임을, 면제 혹은 경감한다면, 그 협정은 무효이며, 또한 사업자, 개인 경영의 투자자에게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 사업자의 근로자가 관리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안전 생산 규정 제도 혹은 조차규정에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지적, 교육하여, 관계되는 규정제도에 따라, 처분을 한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범죄가 된다면,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1조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가 사업소에서 중대한 생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시 긴급구조를 수행하지 않고, 사고의 조사 처리기간 중에 무단으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혹은 도망하여 행방을 감춘다면 강경, 면직의 처분을 주며 도망하여 행방을 감춘자에 대해서는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가 생산안전사고를 은폐하여 보고하건, 잘못 보고하는 경우 혹은 기일을 지연시켜 보고한다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2조 관계되는 지방 인민정부, 안전 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담당하는 부문이, 생산 안전 사고를 은폐하여 보고하거나, 잘못 보고하는 경우 또한 기일을 지연시켜 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시행

고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다른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3조 사업자가 이 법률과 다른 관계되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기준 혹은 업계기준에서 정한 안전생산조건을 정하고, 생산정지, 영업정지, 정리 후에 안전생산조건에 따라 폐쇄 또는 관계부문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94조 이 법률에서 정해진 행정처벌은, 안전생산감독관리의 담당부문이 결정하고, 폐쇄의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의 담당부문이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에서 정해진 권한에 따라 결정하고, 구류의 행정처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처벌의 결정기관에 대해서 관계법률·행정법규에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 규정을 적용시킨다.

제95조 사업소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원의 사망이나, 타인의 재산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고, 이것을 거부 혹은 도망하여 행방을 감춘자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소가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생산안전사고의 책임자가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인민재판소가 법률에 의한 집행 조치를 채택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계속하여 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고, 피해자가 책임자에게 타의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수시에 인민재판소에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96조 이 법률이하의 용어 의의

위험물이란, 폭발성의 물질, 발화성의 물질, 위험화학제품, 방사성물질 등, 안전과 재산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중대 위험원이란, 장기적 혹은 임시적으로 위험물을 생산, 운송, 사용 혹은 보관하거나, 동시에 위험물의 수가 임계량의 단위와 같거나 이것을 상회하는 것을 말한다(장소와 시설을 포함).

제97조 이 법률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